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16 발의연월일: 2025. 4. 7.

발 의 자:어기구·이개호·박희승

오세희 • 박지원 • 소병훈

임호선 · 송옥주 · 주철현

김재원 • 이원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매년 되풀이되는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시행되지는 못하면서 식량안보의 근간인 양곡의 생산에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시행,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타작물재배 지원 등을 통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 다.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양곡수급안정대책 및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 시행, 양곡가격안 정제도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등을 심의 · 의결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미곡"을 "미곡, 밀 및 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기준가격"이란 양곡의 수확기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 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 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시하여야 한다"를 "고시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양 곡의 적정 자급목표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를 "제16조의3에 따른 양 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판매가격은"을 "판매가격과 판매시기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판매가격은"을 "판매물량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 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매입·판매가격은"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양곡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 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 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 (이하 "양곡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 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양곡의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차액(기준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비율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 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시기·절차"를 "매입·판매의 절차"로, "사항과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사항은"을 "사항은"으로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 우: 농업협동조합등을 통한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 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 이 경우 매입가 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 2.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려되는 경 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 4.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물량, 매입·판매시기 및 매입·판매가격
- 5.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
- 6.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정책관
- 2.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4(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재배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 급목표와 연계하여 벼 이외의 작물(이하 "타작물"이라 한다)의 재배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작물 재배지원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면적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타작물의 재배나 휴경 등의 의무를 부

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 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 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 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 ----미곡, 밀 및 콩---는 양곡을 말한다. 3의2. "기준가격"이란 양곡의 <신 설> 수확기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 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이 하 같다), 생산비용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4. ~ 7. (생략)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생 략)

-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 <신 설>

4. (생략)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제1</u> 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세 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 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 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말한다.
4. ~ 7. (현행과 같음)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u>제16</u>
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
<u> </u>
 ④
④
④
 ④ <u>고시하고, 지체 없이 국회</u>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 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 을 <u>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u>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다.

② (생략)

-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제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의 <u>판매가격은</u>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 ③ ~ ⑤ (생 략)
-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 제 용) ①·② (생 략)
 -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u>판매</u> <u>가격은</u> 매입·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①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② (현행과 같음)
]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판매가격과 판매시기는 제1
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③ ~ ⑤ (현행과 같음)
]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
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판매</u>
물량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
<u>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u>
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u>정하고, 매입·판매가격은</u>

④ (생 략)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양곡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 (이하 "양곡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정제도 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양곡의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준 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수있다.

고시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가격안정제도의 차액(기준가격 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비율을 제16 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 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가격안정제도의 실시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에 따 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 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 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 조합등을 통한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 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u>매입·판매 물량의 산정,</u> <u>매입·판매의 시기·절차</u>, 매입 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 매에 필요한 <u>사항과 생산자단</u> 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 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⑥·⑦(생략) <신설> 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 상생산량의 매입. 이 경우 매 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 입가격으로 한다.

2.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5)				
	메일] • 판매의	의 절치	<u>}</u>
		<u>사항</u> -	<u> </u>	

⑥·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
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

- 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의결한다.
-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
 목, 기준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 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 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 4.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 른 양곡의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물량, 매입・판매 시기 및 매입・판매가격
- 5.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 면적의 조정
- 6.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

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 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 성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 정책관
- 2.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 측본부장
-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 산자단체 대표
-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 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신 _설>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기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4(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재배 지원 등) 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 벼 이외의 작물(이하 "타작물"이라 한다)의 재배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타작물 재배지원 계 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면적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타작물의 재배나휴경등의 의무를 부여할 수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